[사 건 명] 행심 2019 - 98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서면사과』 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 000

□ 피청구인 : ◎◎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5.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Ⅰ. 사건개요

가. 청구인 000은 ◎◎학교 학생이고, 피청구인은 위 중학교장으로, 피청구인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라 합니다) 심의결과에 따라 2019. 5. 30. 청구인의 ***에 대한 학교폭력 건에 관하여「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에 의거「서면사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19. 6. 5.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고, 이 사건 처분에 이의가 있어서 2019. 7. 3.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Ⅱ.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가. 학폭위에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으로 경위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서로 간의 잘못으로 처리하고자 '비아냥거리며' 라는 문구를 경위서에 삽입해서 청구인이 원인제공을 한 것으로 만들었고, '비아냥거리며' 라는 주관적 표현은 해석의 오해가 있을 수 있으며, 사실 확인은 할 수 없는 부분으로 학부모 위원들이 서로간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로 인식하도록 유도하였기에 위법하다.

나. 상대학생(***)은 A학생의 모자 빌리는 것이 본인 뜻대로 되지 않자 청구인에게 젓가락과 주스 곽을 얼굴에 연달아 던져 맞추는 물리적 폭행을 먼저 행하였고, 이는 성인도 가만히 참고 있을 수 없는 도발적 행동으로, 청구인은 다 먹은 컵라면을 손으로 엎는 정당한 방어 행동을 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성장판 부근의 왼쪽 팔꿈치 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어 수술을 하였고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으나, 상대학생 측은 진심어린 사과는 커녕 치료비 등의 합의를 위한 청구인의 노력에도 적반하장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명백한 학생으로 상대학생의 진심어린 사과도 받지 못한 채 도리어 언어모욕을 가한 가해학생으로 서면사과문을 작성하도록 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며,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비아냥거리며’라는 표현은 사안 조사한 교사의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청구인, 상대학생, A학생의 진술에 의한 객관적인 표현이며, 청구인의 말은 상대학생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선생님도 무서워하지 않는 학생으로 여겨지도록 하는 말로써, 학교폭력의 정의에 나와 있는 모욕적인 언행에 해당하며,

모자를 빌려주기 싫어하는 A학생과 상대학생의 실랑이과정에 청구인이 선의의 의도가 있고, 사실을 적시했을지라도, 상대학생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행으로 끼어든 청구인에게 일정부분 책임이 있고, 상대학생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학폭위 참석 위원은 모두가 인정하였다.

나. 청구인이 국물이 남아있는 컵라면을 상대학생 쪽으로 들어 엎어 상대학생 뿐만 아니라 옆에 있던 A, B 학생 모두 국물이 옷에 묻었다고, 라면 국물이 뜨거웠다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이는 정당한 방어 행동이라기보다 부적절한 맞대응으로 폭력적인 행동이다.

다. 상대학생은 폭력을 행사하여 청구인에게 부상을 입혔기에 교내봉사의 교육적 선도처분 결정을 내렸고, 청구인의 담임교사의 말에 의하면 사건당일 병원에 입원해있는 청구인에게 상대학생과 상대학생의 어머니가 직접 사과하였다고 말하였다.

라. 학폭위에서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청구인 입장을 충분

히 고려하여 심의하였고, 사안 조치경위서는 관련 학생의 보호자에게는 제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이 사건 처분은 「학교폭력예방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Ⅳ.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2. 판 단

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 모욕, 공갈, 강요 · 강제적인 심부름 등에 의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청구인과 상대 학생의 진술서, 목격학생 확인서 등 증거자료, 피청구인 대리인에 대한 구술심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2019. 4. 23. 17시경 학교 앞 편의점에서, 청구인은 피해학생 등과 컵라면을 먹던 중에, 피해학생이 A학생에게 ‘모자를 빌려달라’고 하자 ‘빌

리면 안돌려줘 빌려주지 마’ 라고 하고, 피해학생이 ‘하루만에 안 돌려주면 학생부 선생님한테 일러’ 라고 하자, 청구인은 ‘선생님 안 무서워해, 무서워하지 않아’ 라고 말하였고,

피해학생이 화가나 나무젓가락과 빈 주스곽을 던지자, 청구인은 국물만 남은 사발면을 들어서 엎어 피해학생과 주변 학생들 옷에 묻게 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은 A학생에게 모자를 빌려주지 말라고 말한 것은 선의를 가지고 한 말이고, 피해학생이 학생부 선생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에 부합함에도, 학폭위에서 제시된 조치경위서에 ‘비아냥거리며’ 라는 주관적 표현을 기재하여 언어폭력으로 오해하도록 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A학생이 피해학생에게 모자를 빌려주지 않으려 했고, 실제 모자를 빌려줄 경우 하루 지나 받지 못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선의로 했던 말로 보이고, 피청구인 대리인 구술심리에 의하면 피해학생이 학생부 선생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점도 사실에 부합하는 면이 있으나,

청구인이 피해학생의 평소 태도를 알고 있다고 해서 피해학생이 제3자에게 모자를 빌리려고 하는 것에 관하여 피해학생을 비하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정당화 되지는 않고, 실제 피해학생을 화나게 해서 피해학생의 폭력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청구인 스스로도 피해학생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 점에 관하여 미안하다고 인정하고 있

고, 조치경위서의 ‘비아냥거리며’ 표현은 청구인, 피해학생, 목격학생의 진술을 토대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은 컵라면 국물을 피해학생에게 뿌린 행위는 피해학생이 젓가락, 주스곽을 먼저 던지자 정당한 방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청구인이 피해학생을 화나게 해서 피해학생이 나무젓가락, 주스곽을 던지자 청구인의 먹던 컵라면 국물을 피해학생에게 뿌린 행위는, 폭력에 폭력으로 맞대응한 것으로, 이는 부적절한 대응이며 정당방위 행위로도 볼 수 없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과중한 처분이라고 하므로 살피건대,

학폭위에서는 청구인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고, 가해학생조치별 적용기준을 판정하면서, 이 사건 경위와 피해학생이 청구인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서 청구인이 뒤로 넘어지며 팔꿈치가 꺾여 골절되어 6주 상해를 입었던 점, 청구인과 피해학생 간에는 화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심각성 낮음1점, 지속성, 고의성 각 없음 0점, 반성정도는 매우 높음 0점, 화해정도도 높음 1점으로 각 판정하여 총 2점에 해당하는 이 사건 ‘서면사과’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여, 위 법률 제17조의 의거하여 재량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

Ⅴ.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